

영장 없는 경찰수색¹⁾의 근거조항에 관한 멕시코 대법원 판결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 법학석사 인권전공

김민주



(출처: 2018년 3월 14일자, 신문 El Financiero,

<http://www.elfinanciero.com.mx/nacional/revision-a-personas-o-autos-solo-en-caso-de-investigacion-corte>)

1. 서론

멕시코에서 경찰은 부패한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실제로 경찰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 악용하여 시민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압적인 수색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나 소송이 많다. 실제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조사해 발표한 멕시코 아요치나파 (Ayotzinapa) 43명의 대학생 강제 실종 사건²⁾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직접

1) Las inspecciones policiacas sin orden judicial o ministerial.

학생들을 체포하여 게레로스 우니도스(Guerreros Unidos)라는 지역 마약 카르텔에게 넘겨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와 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멕시코에서 경찰은 대부분 마약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강해 많은 시민들이 경찰에게 더 큰 권력이나 권한을 줄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될 남용 및 악용 사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개인 수색 혹은 차량 수색이 늘 악용된 사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올해 3월 11일 소노라주(Eatado de Sonora) 오브레곤-에르모시오 고속도로(Carretera Obregón-Hermosillo)에서 연방경찰은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연방교통법 위반으로 정차시켰다. 차량 운전자와 그 동행자는 경찰이 차를 세우자 매우 불안해하며, 긴장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주행 중인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목적지로 이야기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 수색을 하였고, 차량 수색을 통해 스페어타이어를 보관하는 부분에서 뚜껑이 쇠로 된 나무 상자를 발견하였다. 경찰은 상자 뚜껑이 새로 조립된 것처럼 보이는데 수상함을 느끼고 상자를 열어 검사하였고, 이 상자 안에서 44개의 봉투에 나뉘어 담겨진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마약 27.6kg을 발견했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방검찰에게 인계되었고 조사 후 전문적인 마약 운반범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경찰은 교통법 위반으로 멈춘 차량 운전자와 동행자의 수상한 행동과 논리적이지 않은 답변에 의심을 품고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였으며 수색 후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발견하면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마약, 납치, 강도, 불법 총기 소지, 인신매매 등이 만연한 멕시코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개인 및 차량 수색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 치안, 공공안전과 평화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만약 엉뚱한 대상을 수색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나 정확한 기준이나 프로토콜이 없어 경찰에게 전적으로 개인과 차량 수색 결정을 맡기는 경우, 권력

2) 2015년 2월 26일자, 본 통신원의 멕시코 ‘일반적 이동의 권리’ 헌법 개정에 대한 현지 리포트 참조.

남용 및 악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논쟁이 되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의 요청으로 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은 이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형사소송법 제251조와 제268조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³⁾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형사소송법(Código Nacional de Procedimientos Penales) 제251조와 제268조가 헌법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형사소송법 제251조⁴⁾는 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 가능한 조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항은 바로 개인 수색이 가능한 제251조 제3항과 차량 수색이 가능한 제5항이다(각주 4 굵은 글자 표시). 제268조⁵⁾는 개인 수색에 대한 조항으로

3) 대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정부와 주(州), 시(市) 정부, 상·하원 의회, 연방 기관 혹은 멕시코 시티 기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연방 위원회, 헌법과 관련된 혹은 일반 법률 규정에 따라 주(州)에 속하는 권력 등이다.

4) 제251조. Actuaciones en la investigación que no requieren autorización previa del Juez de control
No requieren autorización del Juez de control los siguientes actos de investigación
I. La inspección del lugar del hecho o del hallazgo;
II. La inspección de lugar distinto al de los hechos o del hallazgo;
III. La inspección de personas;
IV. La revisión corporal;
V. La inspección de vehículos;
VI. El levantamiento e identificación de cadáver;
VII. La aportación de comunicaciones entre particulares;
VIII. El reconocimiento de personas;
IX. La entrega vigilada y las operaciones encubiertas, en el marco de una investigación y en los términos que establezcan los protocolos emitidos para tal efecto por el Procurador;
X. La entrevista de testigos;
XI. Recompensas, en términos de los acuerdos que para tal efecto emite el Procurador, y
XII. Las demás en las que expresamente no se prevea control judicial
En los casos de la fracción IX, dichas actuaciones deberán ser autorizadas por el Procurador o por el servidor público en quien éste delegue dicha facultad.
Para los efectos de la fracción X de este artículo, cuando un testigo se niegue a ser entrevistado, será citado por el Ministerio Público o en su caso por el Juez de control en los términos que prevé el presente Código. (참조: El Código Nacional de Procedimientos Penale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CNPP_170616.pdf)

5) 제268조. Inspección de personas

범죄 행위나 조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수색에 있어 “범죄 조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하여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행범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혹은 몸이나 옷 등에 물건 등을 숨기는 조짐이 보일시에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각 주 5 굵은 글자 표시). 덧붙여 “개인에 대한 수색은 어떤 경우든 표면적 수색으로 한정하며 옷을 벗거나 신체의 더 은밀한 부분의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반드시 개인에게 수색의 동기를 밝혀야 하며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장 없이 개인이나 차량을 수색하는 것이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견해 혹은 직관에 치중되어 있고, 경찰이 얼마든지 이를 남용 및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대법원에서의 판단⁶⁾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한 국가형사소송법 제251조와 제268조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구분하여 판단했다.

(1) 법정의견 - 합헌

대법관 마르가리타 베아트리스 루나 라모스(Margarita Beatriz Luna Ramos)

본 재판관이 경찰 수색이 합헌임을 판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En la investigación de los delitos, la Policía podrá realizar la inspección sobre una persona y sus posesiones en caso de flagrancia, o cuando existan indicios de que oculta entre sus ropas o que lleva adheridos a su cuerpo instrumentos objetos o productos relacionados con el hecho considerado como delito que se investiga. La revisión consistirá en una exploración externa de la persona y sus posesiones. Cualquier inspección que implique una exposición de partes íntimas del cuerpo requerirá autorización judicial. Antes de cualquier inspección, la Policía deberá informar a la persona del motivo de dicha revisión, respetando en todo momento su dignidad.

6) NÚMERO 10/2014 Y SU ACUMULADA 11/2014, SESIÓN PÚBLICA ORDINARIA DEL PLENO DE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 CELEBRADA EL MARTES 13 DE MARZO DE 2018.

제21조 첫 번째 단락에서 “범죄의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관할이며, 이들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수사한다”⁷⁾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공공치안은 연방, 연방기관, 지방자치기관의 책임으로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와 수색을 할 수 있다”⁸⁾고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취지이다. 또한 헌법 제21조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공치안제도 일반법’(Ley General del Sistema Nacional de Seguridad Pública)⁹⁾ 제1조에서 “본 법률은 헌법 제21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공공치안제도의 통합, 조직,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연방, 주,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공공치안은 연방, 연방단체와 지방단체의 기능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자유, 질서, 공공평화를 보전하고자 하며 범죄 예방, 행정적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서 “공공치안의 기능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경찰조직, 검찰조직의 관할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도 경찰의 범죄 조사 수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국가형사소송법 제132조에서 경찰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행위를 통해 익명의 정보의 진실을 확인할 것,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 소송절차를 수행할 것, 체포를 실행할 것, 범죄 조사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그 목적을 최선으로 수행하기 위해

7) 헌법 제21조. La investigación de los delitos corresponde al Ministerio Público y a las policías, las cuales actuarán bajo la conducción y mando de aquél en el ejercicio de esta función. (이하 생략)

(참조: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150917.pdf)

8) 헌법 제21조. (이전 생략) La seguridad pública es una función a cargo de la Federación, las entidades federativas y los Municipios, que comprende la prevención de los delitos; la investigación y persecución para hacerla efectiva así como la sanción de las infracciones administrativas, en los términos de la ley, en las respectivas competencias que esta Constitución señala. La actuación de las instituciones de seguridad pública se regirá por los principios de legalidad, objetividad, eficiencia, profesionalismo, honradez y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reconocidos en esta Constitución. (이하 생략)

9) 참조: La Ley General del Sistema Nacional de Seguridad Pública, <http://www.cuernavaca.gob.mx/ssc/wp-content/uploads/2013/03/Ley-General-del-Sistema-Nacional-de-Seguridad-P%C3%BAblica.pdf>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조사: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보존, 범죄 조사 행위의 실현을 위한 검찰의 요청을 그 지휘와 명령 아래 실행, 2. 예방: 범죄나 행정적 위법 예방을 위한 모든 행위, 조사, 수색, 감시 등 3. 공공 질서와 평화를 보장, 유지, 재정립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치안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며, 효율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 국가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국가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의 임무를 고려할 때 당연한 부분이고, 남용 및 악용 사례와 관련하여 동법 제132조에서 수색과 조사의 실행과 그 결과를 검찰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쟁점 중의 하나로 어느 순간부터를 조사과정이라고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 국가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를 구체화한 순간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를 전해들은 순간 즉, 신고, 고소, 익명의 정보 등 어떤 형태든 범죄 행위의 실현에 대한 정보를 받은 순간부터 조사는 시작될 수 있다.

경찰은 당연히 범죄의 순간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용의자를 찾기 위해 개인 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출구가 있는 쇼핑몰을 통해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도망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은 사람들을 수색해 용의자를 찾아야 한다. 국가형사소송법 제150조¹⁰⁾에서도 언급하는 긴급한 상황(caso urgente)에 따라 이런 수색은 당연히 위헌이 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인 제268조에서 “범죄 조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하여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행범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혹은 몸이나 옷 등에 물건 등을 숨기는 조짐이 보일시에 가능하

10) 제150조. 긴급한 상황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검찰은 책임과 근거 하에 자신의 행동의 증거를 표시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사람의 체포를 명할 수 있다.

I. 중범죄로 분류되는 행위의 증거가 있고 특정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거나 참여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중범죄로 분류되어 긴급한 상황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방구금에 해당해야 하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II. 범죄자가 사법적 행위에서 도망갈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III. 시간, 장소 혹은 어떤 경우의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범죄자가 도주할 수 있는 경우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 경우 옷 속에 무기나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숨기는 경우, 긴급성에 의해 수색을 할 수 있다. 남용 사례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형사소송법 제150조에서 규정했듯이 “긴급한 상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장 루이스 마리아 아길라르 모랄레스(Luis María Aguilar Morales) 이 상황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경우로, 자동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영장 없는 개인이나 차량의 수색을 통해 범죄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한 경찰의 개인 및 차량 수색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고 강압적인 위협이나 간섭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과 차량의 수색은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예방적이고 임시적인 통제를 위한 것이며, 헌법 제16조 열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어떤 방법이나 조사를 통해서든 가장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21조 첫 번째와 아홉 번째 단락에서는 범죄 조사를 위한 경찰과 검찰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6조와 제21조 열 네 번째 단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판사의 통제나 허가가 없는 조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우를 분류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인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느냐, 조사의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등에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심판대상조문 제268조의 경우, 개인의 수색은 표면적이고 가벼워야 하고, 혹시 몸에 숨기고 있는 물건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더 자세한 신체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사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다. 신체 수색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나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

며 이 방법은 경찰이 범죄 조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예방, 추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본다. 당연히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색이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부상, 손상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는 정확한 사건의 경우와 판사의 허가가 아니면 수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남용하는 경찰이나 검찰조사관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 하비에르 라이네스 포티섹(Javier Laynez Potisek)

항소 사건번호 3463/2012의 경우, 경찰이 길을 순찰하다가 누군가가 마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그 제보에서 묘사하는 대상과 아주 유사한 사람을 발견해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했고,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 플라스틱 봉투 안에는 총, 돈, 코카인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절차에 따라 검찰로 인계했으나 용의자는 경찰이 영장 없이 자신을 수색했다며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다른 경우로 항소 사건번호 1596/2014인데, 항소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공치안부(Secretaría de la Seguridad Pública)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이들은 과속하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고 공공치안부가 택시를 멈추어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차량을 수색했다. 택시에서는 수류탄 하나와 마리화나를 담은 봉지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들에서의 쟁점은 경찰이나 공공치안부가 “당국의 서류 없이 수색을 하였고 나중에 현행범으로 데려갔다”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신고(denuncia informal)를 바탕으로 혹은 다른 법 위반으로 붙잡혀 이루어진 수색인 경우, 이것을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체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방법은 경찰이나 수사관이 수색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색은 조사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를 저질렀던 혹은 저지르고 있는 용의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신고는 영장 없는 수색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경찰의 행위는 기록이 되어 그 순간에 변호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판사의 통제가 가능하다.

대법관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메나(Afredo Gutiérrez Ortiz Mena)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구한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지만,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법관 알베르토 페레스 다얀(Alberto Pérez Dayán)

위헌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청구 조항은 합헌이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행위를 실현하는 사법집행자가 제어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밖에 대법관 호르헤 마리오 파르도 레보예도(Jorge Mario Pardo Rebolledo), 대법관 에두아르도 메디나 모라(Eduardo Medina Mora I.)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반대의견

대법관 아르투로 잘디바르 렐로 데 라레아(Arturo Zaldívar Lelo de Larrea), 대법관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Norma Lucía Piña Hernández)

국가형사소송법 제251조 제3항과 제5항 자체가 위헌이며, 제268조에서 “몸이나 옷 등에 물건 등을 숨기는 조짐이 보일시에 가능하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 또한 위헌이다.

한편, 대법관 호세 라몬 코시오 디아스(José Ramón Cossío Díaz)는 심

판대상조문 두 개 모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관 호세 페르난도 프랑코 곤잘레스 살라스(José Fernando Franco González Salas)

당연히 일반 시민들에게 경찰 수색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편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경찰 수색은 예외적인 형태로 특정한 경우에 기반을 두는데, 이때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 허가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다. 국가형사소송법에서 기본적인 지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소한 사법집행자가 따라야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국가형사소송법 제251조 제3항의 개인 수색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되, 동조 제5항의 차량 수색과 제268조에서 “몸이나 옷 등에 물건 등을 숨기는 조짐이 보일시에 가능하다”의 부분은 위헌으로 선고한다. 다만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표결한다.

(3) 주문

대법관 호세 페르난도 프랑코 곤잘레스 살라스가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일부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11인의 대법관 중 8인의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않아 주문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합헌 8표, 위헌 3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국가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특히 현행법의 체포는 고발이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본 판결은 현재 멕시코에서 아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 집단의 권리를 위해서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없는 경찰의 수색이 모든 경우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남용 및 악용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색이 없다면 눈앞에서 범죄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부패한 멕시코 경찰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주면 분명 남용 및 악용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멕시코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수색에 익숙할 것이다(차량 수색은 찾고 있는 특정 차량이 있을 경우나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잘 하지 않는다-적어도 대도시들에서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 불편하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수색이 집단과 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또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시민의 의무라고 받아들이고 대부분 협조한다. 마약이나 불법 무기 소지가 쉬운 특수한 상황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